

계약보증금 납부 감면기준

2007. 09



자 재 처

계약보증금 납부 감면기준

제 1 조 (목 적) 이 기준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주)”라 한다)가 계약업무요령 제77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시 적용할 계약보증금 납부 감면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계약보증금 납부 감면 적용범위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초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06.12월 기준 6.7억원, 2년마다 변경) 미만 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서류제출) ① 낙찰자 또는 계약예정자는 계약보증금 납부 감면을 원할 경우 낙찰통보서 또는 계약예정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한수원(주) 계약담당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보증금 납부 감면 신청서 1부 (별표 2 참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1부
3.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별표 3 참조)

② 해외업체가 D/B(Dun & Bradstreet) Rating 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과거 물품 납품실적이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등급에 의거 판정한다.

제 4 조 (적용기준) ① 심사에 적용되는 기간계산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서 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을 기준일로 하며 외자의 추정가격 산정은 입찰공고일 또는 견적요청서 발급일 최초 고시된 한국외환은행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T/T Selling Rate)를 기준으로 한다.

② 비율·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외화로 표시된 결산서 등의 자료에 적용될 환율은 한국외환은행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최종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T/T Selling Rate)을 기준으로 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제 5 조 (평가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 납부 감면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계약보증금 납부 감면 신청서를 심사한다.

- ② 납품실적, 재무상태 및 낙찰률의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의하되, 세부 적용내용은 별표 [2-1]에 의한다.
 - 가. 물품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이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인 것으로 한다.
 - 나. 물품 납품실적은 당사 납품횟수(계약단위)에 의해 평가한다.
 2. 재무상태평가는 다음 각 목에 의하되, 세부 적용내용은 별표 [2-2]에 의한다.
 - 가. 업종평균을 적용을 위한 평가대상업종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에서 분류한 업종의(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최근 3년간 평균율을 적용한다.
 - 나. 재무상태평가의 심사항목은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비율로 구성된다.
 3. 낙찰률 평가는 다음 각 목에 의하되, 세부 적용내용은 별표 [2-3]에 의한다.
 - 가. 낙찰률이 7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납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 예정가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대비 낙찰률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한다.
- ③ 결산서는 최근 1 회계년도의 결산서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새로이 설립된 업체나 합병, 분할 및 사업 양수도를 한 업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
 - 가. 최초결산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나. 최초 결산서는 설립당시 작성된 결산서나 입찰일 전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한다.
 2. 합병, 분할 및 사업 양수도를 한 업체의 경우
 - 가.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 양수도에 따른 신고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는 합병, 분할 및 사업 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해당 1개 업체의 결산서로 평가하거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한다.
 - 나. 동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에 의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하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 다.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는 분할, 합병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작성되거나, 동일자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한다.
- ④ ③항에 의해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 2 조에 의한 외감법 적용대상업체는 공인 회계사의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외감법 비적용대상업체는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결산서(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외소재 업체의 경우는 국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외감법 적용대상업체의 경우는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첨부하는

감사보고서 등) 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재무상태 평가에서 취득한 점수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한다.

제 6 조 (판정기준) ①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 6.7억원 미만인 경우(심사평가)

1.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이면 계약보증금 전액을 납부 면제하고,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계약보증금 50%를 납부 면제한다.
2.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후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경우(심사평가 생략)

1. 당사에 물품 납품실적이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실적이 없는 경우로서 낙찰률이 75% 이상인 경우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납부 면제한다.
2. 1호의 경우 제3조 제1항의 제출서류중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만 징구한다.

③ 해외업체가 D/B(Dun & Bradstreet) Rating 평가서를 제출할 경우

1. 과거 물품 납품실적이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실적이 없을 경우 2호의 등급에 의거 판정한다.
2. D/B Rating이 1 or 2(우수)인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납부 면제하고 D/B Rating이 3(양호)인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50%를 납부 면제한다.

제 7 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①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의 처리)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이전인 경우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07년 10월 0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계약보증금 납부 감면 심사항목

심사항목	심사분야	배점	등 급	평점		
I. 납품실적	최근 3년내 당사 납품횟수 (계약단위)	20	A. 3회 이상	20		
			B. 2회	18		
			C. 1회	16		
II. 재무상태	업종평균율 (최근 3년평균)에 대한 당해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25	A. 40% 미만	25		
			B. 40% 이상~80% 미만	23		
			C. 80% 이상~120% 미만	21		
			D. 120% 이상	19		
	업종평균율 (최근 3년평균)에 대한 당해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20	A. 120% 이상	20		
					B. 80% 이상~120% 미만	18
					C. 40% 이상~80% 미만	16
			D. 10% 이상~40% 미만	14		
	업종평균율 (최근 3년평균)에 대한 당해업체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비율	15	A. 120% 이상	15		
					B. 80% 이상~120% 미만	13
					C. 40% 이상~80% 미만	11
					D. 10% 이상~40% 미만	9
III. 낙찰률	낙찰률	20	A. 80% 이상	20		
			B. 75% 이상 ~ 80% 미만	18		
			※ 75% 미만시 납부 감면대상 에서 제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납품실적

[별표 1-1] < 배점한도 20점>

(단위: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 3년내 납품실적	당사 납품횟수	20		
	(계약번호 :)		A. 3회 이상	20
	(계약번호 :)		B. 2회	18
	(계약번호 :)		C. 1회	16
	(회)			

2. 재무상태

[별표 1-2] < 배점한도: 6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업종평균율 (최근 3년평균)에 대한 당해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25	A. 40% 미만	25
			B. 40% 이상~80% 미만	23
			C. 80% 이상~120% 미만	21
			D. 120% 이상	19
나.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업종평균율 (최근 3년평균)에 대한 당해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20	A. 120% 이상	20
			B. 80% 이상~120% 미만	18
			C. 40% 이상~80% 미만	16
			D. 10% 이상~40% 미만	14
다. 매출액 순이익비율	업종평균율 (최근 3년평균)에 대한 당해업체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비율	15	A. 120% 이상	15
			B. 80% 이상~120% 미만	13
			C. 40% 이상~80% 미만	11
			D. 10% 이상~40% 미만	9

① 평가요소별 업종평균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 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를 적용한다.

- 제1차금속 : 27, 조립금속제품 : 28, 기타 기계 및 장비 : 29,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 30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51, 소매업: 52

- ② “가”항의 자기자본이 부(-)의 수치이면 자기자본 금액을 영(0)으로 계산하고 “다”항의 업종평균비율이 부(-)의 수치로써 심사대상자의 당해 비율이 양(+)의 수치이면 최고점으로 평점하고, 심사대상자의 당해 비율도 부(-)의 수치이면 영(0)점으로 평점한다.
- ③ 심사항목별 평가는 최근 1 회계년도의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관할세무서 승인 재무제표, 또는 공인기관이나 단체에서 확인한 회계관련자료에 따르되, 국내 회계기준과 상이한 국외소재업체의 재무제표의 경우는 심사대상자가 심사항목에 대한 국제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년도의 해당자료가 없거나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년도 반기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자료에 의한다.

3. 낙찰률

[별표 1-3] < 배점한도: 20점 >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낙찰률	낙찰률	20	A. 80% 이상 B. 75% 이상 ~ 80% 미만 ※ 75% 미만시 남부 감면대상에서 제외	20 18

[별표 2]

계약보증금 납부 감면 신청서

- 입찰번호 :
- 계약건명 :
- 입찰일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 계약보증금 납부 감면심사와 관련하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업무요령 제 97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1. 종합평가

구분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납품실적	20		
재무상태	60		
낙찰률	20		
합계	100		

2. 납부 감면을 적용

배점	심사평점	감면율	해당여부
100점	90점 이상	100%	
100점	85점 이상	50%	

년 월 일

입찰자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귀하

1. 납품실적 [별표 2-1]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가. 최근 3년내 납품실적	당사 납품횟수	20	A. 3회 이상	20		
	(계약번호 :)		B. 2회	18		
	(계약번호 :)		C. 1회	16		
	(회)					
납품실적 점수(계)				20		

2. 재무상태 [별표 2-2]

심사항목	평가요소	평가자료		등 급	평점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금액(천원)	비 율				
가.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업종 3년 평균율 (a)에 대한 당해 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b) <3년 평균율 (a): %>	(타인자본)	_____% [=(b/a)×100]	A. 40% 미만	25		
		(자기자본)		B. 40% 이상 - 80% 미만	23		
		부채비율		C. 80% 이상 - 120% 미만	21		
		(b) : ____%		D. 120% 이상	19		
나.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업종 3년 평균율 (a)에 대한 당해 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b) <3년 평균율 (a): %>	(유동자산)	_____% [=(b/a)×100]	A. 120% 이상	20		
		(유동부채)		B. 80% 이상 - 120% 미만	18		
		유동비율		C. 40% 이상 - 80% 미만	16		
		(b) : ____%		D. 10% 이상 - 40% 미만	14		
다. 매출액 순이익비율 (당기순이익 /매출액)	업종 3년 평균율 (a)에 대한 당해 업체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비 율(b) <3년 평균율 (a): %>	(당기순이익)	_____% [=(b/a)×100]	A. 120% 이상	15		
		(매출액)		B. 80% 이상 - 120% 미만	13		
		매출액순이익		C. 40% 이상 - 80% 미만	11		
		율(b): ____%		D. 10% 이상 - 40% 미만	9		
재무상태 점수(계)					60		

3. 낙찰률 [별표 2-3]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가. 낙찰률	낙찰률	15	A. 80% 이상 B. 75% 이상 ~ 80% 미만 ※ 75% 미만시 감면대상에서 제외	20 18		
낙찰률 점수(계)				20		

[별표 4]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계약보증금 납부 감면 신청서 (자기평가 및 심사표 포함)	○ 신청자	별표 2 참조
재무상태	2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① 공인회계사 감사법인 ② 기타 법인 및 개인사업자	○ 당해 공인회계사 ○ 세무서장 확인 등	
지급각서	3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 신청자	별표 3 참조